

전북대학교 사회보장론

-고용보험제도 보고서-

202516253 강민서

202516479 김지을

202516791 염지수

202517074 정하량

목차

I. 고용보험의 연혁

1. 제도의 배경
2. 제도의 변화과정

II. 고용보험의 주요 제도

1. 고용보험의 의의
2. 실업급여
3. 고용안정사업
4. 직업능력개발사업
5. 모성보호사업

III. 고용보험의 역할과 기능

1. 제도의 역할 및 기능
2. 제도의 성과

IV. 고용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V. 기관 탐방 소감 및 평가

1. 기관 개요 및 방문 정보
2. 기관의 역할 및 주요 기능
3. 기관 근무를 위한 준비사항
4. 실업급여 팀 주요 프로젝트 및 제도
5.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 제도의 개선 필요 사항
6. 느낀 점 및 종합 평가

VI. 참고문헌

I. 고용보험의 연혁

1. 제도의 배경

1980년대 후반부터 인력수급 불균형,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조정 지원, 직업훈련 강화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고용보험제도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경제 및 기업의 구조조정과 노동시장의 유연화 문제가 경영계와 노동계 간의 중요한 현안으로 등장하였다. 고용보험제도의 도입과 관련한 국가의 공식적 결정은 1991년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이후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진행될 경우 필연적으로 노동의 희생을 수반할 것이라는 점이 1993년에 고용보험법의 제정을 촉진하는 배경이 되었다.

1997년 말에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표면화된 외환위기는 경제 위기로 이어졌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광범위한 기업의 구조조정이 요구·시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높은 실업률을 겪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실업 예방과 고용 촉진을 도모하고, 근로자의 직업 능력 개발과 향상을 지원하며, 국가의 직업소개 및 직업지도 기능의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제도를 마련하였다. 또한 실업한 근로자에게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생활의 안정을 지원하고, 구직활동을 촉진하며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1993년 12월 27일에 고용보험법이 제정되어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2. 제도의 변화과정

IMF 구제금융 이후 실업률이 크게 상승하고 고용불안이 심화되면서 사회적 안전망 강화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고, 대량실업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고용보험의 확대가 필요해졌다. 특히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의 비율이 증가했으며, 실직의 위험이 가장 높고 근로조건도 열악하여 더 많은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4인 이하 사업장에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사회적 보호망으로부터 방치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우리나라 고용보험은 1993년 12월 고용보험법이 제정되었고,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4대 사회보험 중 고용보험이 가장 늦게 도입되었으나, 1998년부터 종업원 1인 이상 사업장의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전면 확대 적용되었다.

고용보험제도는 시행된 지 얼마 안 되어 1998년 10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 4인 이하 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 분야 중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법인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2004년 1월 1일부터는 일용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에게도 확대·시행하였다.

2005년 1월 1일부터는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를 통합 징수하기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였다.

2006년부터는 65세 이상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제외한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 능력 개발사업의 적용을 받도록 하였다. 또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도 소득 등을 고려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고용안정사업과 직업 능력 개발사업에 임의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2년에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되어 1인 자영업자와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도 실업급여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2019년부터는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 중에 사업주만 바뀌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65세 이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한 근로자가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된 경우에는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2020년 12월 23일에는 모든 취업자를 실업급여 제도 보호 범위 안에 포함하기 위해 고용보험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이 로드맵은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고용보험의 실질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소득 중심의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모든 취업자에게 보편적인 고용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 국민 고용보험의 첫걸음으로서 2020년 12월 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을 시행하였으며, 2021년 7월 1일부터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안전망이 확충되었다.

또한, 2009년부터는 취약계층 구직자를 지원하기 위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시행하며, 저소득층과 청년, 중장년층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운영하였으나, 해당 사업은 법률에 근거한 제도가 아니라 정부 사업의 형태로 운영되면서 정책 운영에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고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위해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였으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II. 고용보험의 주요 제도

1. 고용보험의 의의

고용보험이란 전통적으로 실업보험사업,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사업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장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이 세 가지로 볼 수 있으며, 최근에는 모성보호사업까지 포함해서 말하는 경우가 많다.

2. 실업급여

실업급여란 고용보험가입 근로자가 실직을 하여 다시 구직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고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게 해줌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이러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지며, 실업급여는 실직에 대한 보상금이나 위로금의 성격이 아니며, 고용보험료 납부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로 지급되는 제도도 아니다.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일할 의지와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경우,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하는 동안 생활 안정을 돕고 취업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이다. 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갖춘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이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이직일 당시 연령과 (50세를 기준으로 함)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이직 전3개

월 동안의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한다. 1일 상한액은 68,100원이며, 1일 하한액은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80%,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기준보수의 60%이다. 구직급여는 실업을 한 후 12개월이 경과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해도 더 이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취업촉진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의 조기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조기재취업수당이라고 할 수 있다.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을 제공함으로써 수급자의 장기적인 실업을 방지하고 재취업을 촉진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조기재취업수당의 경우 실업 신고일로부터 2주가 지난 후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거나 창업하였으며, 12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고용되거나 사업을 진행한 경우에 잔여 소정급여의 2분의1을 지급받을 수 있다. 만약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근로자에 다시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1호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이 불가하다.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정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한 경우 훈련을 받은 날마다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또한 광역구직활동비는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이상 떨어진 지역에서 구직활동을 한 경우, 해당 활동에 소요된 교통비와 숙박비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3. 고용안정사업

고용안정사업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및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에게 실업을 예방하고 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실시된다. 고용안정사업은 고용창출, 고용조정 및 촉진, 건설근로자지원 등 네 가지 사업으로 구분된다.

2004년에 도입된 고용창출 사업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인력이 부족해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도이다. 주요 제도로 '교대제전환지원금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교대제근로로 전환하여 4인 이하의 조에서 근로자 수를 늘린 경우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는 것이다.

고용조정지원사업은 고용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인건비를 일부 부담하여 근로자의 실업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이다. 고용조정지원사업은 고용유지지원금, 전직지원장려금, 재고용장려금 이렇게 세 가지 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지원요건으로는 경영상의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를 위해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불한 경우,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유·무급휴직을 부여한 경우, 고용유지에 적합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업종을 변경한 뒤 기존 업종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의 60% 이상을 전환된 업종에 배치한 경우, 교대제를 전환하여 조가 증가한 경우 (4조 이하인 경우에만) 등이 있다. 이 때 사업주는 휴업·휴직 수당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훈련비와 훈련수당, 임금비의 일부 등을 수급한다.

4. 직업능력개발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은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과 훈련을 통해 실시된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사업, 국민내일배움카드,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 훈련 등이 있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주가 주도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정책으로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핵심 사업이며, 기업 성과를 높이기 위해 많은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다.

5. 모성보호사업

모성보호사업이란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육아와 출산 등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근로 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2006년부터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을 겪은 근로자에게 45일의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유·사산 휴가제’를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하는 법이 시행되었고 여성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90일의 출산휴가 급여 전액을 고용보험과 정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도록 되어있다. 또 대표적으로는 육아휴직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최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육아휴직을 이용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년 동안 통상임금의 80%수준의 급여가 지급된다. (월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3+3 부모육아휴직제도는 생후 12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휴직 시작 후 첫 3개월 동안 부모 각각에게 통상임금의 100%수준의 육아휴직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육아휴직 시작 전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육아휴직급여는 휴직 개시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Ⅲ. 고용보험의 역할과 기능

1. 제도의 역할 및 기능

1) 고용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는 노동력 이동의 활성화를 통해 실질적 고용조정을 한다. 이는 곧 산업 및 노동력 구조의 고도화를 야기하고 기업의 경영합리화에 기여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의 증가를 가능하게 한다. 고용보험제도의 가장 실질적인 목적은 노동자가 실직 문제에 처했을 때 실업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직자와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고용보험은 취업훈련을 지원하고 교육을 진행하는 기업에게는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교육훈련을 활성화시킴으로서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한다. 마지막으로 경기조절기능을 수행한다. 불황의 시기에는 실업자 증가에 따른 총실업급여액의 증가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유효수요 부족으로 인한 경기침체를 완화시켜 실업발생을 줄인다. 반면 호황의 시기에는 실업자의 감소로 인해 총실업급여액이 감소하게 되고 유효수요 또한 감소하면서 경기에 대한 자동안정장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2)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생활상의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을 촉진하며,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가진다. 실업급여의 지급은 실직자가 실직 후 자신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직장을 찾는 데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한다. 두 번째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지방노동관서로의 출석이 필수적이므로 이들이 구인, 구직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가능해져 재취업이 보다 용이할 수 있다. 또, 국가의 입장에서는 노동력의 이

동 및 인력 수급 상황의 파악이 쉬워 실효성이 있는 고용 정책 수립이 가능해진다. 실업급여는 사회적 기능도 수행하는데, 구조적 이유 때문에 비자발적으로 실업을 당한 근로자 개인의 비용을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분담하면서 사회적 비용으로 흡수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4) 직업능력개발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은 근로자에게 직업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기능을 한다. 1999년 이후 전사업장이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적용을 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인력 개발의 핵심적인 제도로 확립되었다.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유능한 인적자원의 개발을 통해 국가의 성장역량을 확보하고 근로자 개인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대상자에게 자신의 직업능력을 강화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상승시킨다. 직업능력개발사업은 근로자의 재취업과 노동이동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 또한 수행한다.

5) 고용안정사업

고용안정사업은 사회구조적인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실직하거나 고용기회가 감소하는 것에 대비하여 고용의 기회를 확대하고, 실업을 예방하고, 사업주의 고용조정을 지원하는 기능을 한다. 고용안정사업은 실업자가 일자리에 고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고용안정사업에 해당하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적인 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근로의욕을 높이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증진한다. 근로장려금은 차상위계층이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게 돕고 근로의욕을 제고해 원활한 근로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생산적 복지제도의 역할을 수행한다.

2. 제도의 성과

1) 실업급여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실업급여 수급 시간 중 재취업한 사람의 비율이 30.3%를 기록했다.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률은 2008년에 38.8%로 최고점을 찍은 후 2017년부터 20%로 떨어졌다.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으로 2020년에는 26.8%, 2021년 26.9%, 2022년 28%로 재취업률이 다시 상승하는 정도는 크지 않았다. 재취업한 사람의 비율이 상승한 데에는 수급자 유형에 따라 실업 인정 방식을 세분화하고 대면 상담을 확대한 점이 큰 효과로 작용했다. 실업급여의 재취업촉진성과는 ‘구직급여수급 중 재취업률’과 ‘구직급여 수급일수 소진율’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구직급여수급 중 재취업률’은 2011년 33.1%에서 2013년 35.2%로 2.1%p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3) 직업능력개발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실시되고 일반 국민들이 이에 접근할 기회가 확대되었다. 훈련 지원 분야 또한 제조업, 생산직에 제한되지 않고 비제조업 분야로 확대되어 국민들이 접근하기에 용이해졌다. 일반 기업뿐만 아니라 민간의 자율적인 직업훈련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한 직

업훈련이 지닌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직업훈련 컨소시엄 사업을 실시한 후, 2007년 기준 70개의 컨소시엄으로 규모가 확대되었고 이 사업에 참가한 중소기업도 시작년도와 비교해 약 59개로 늘어나 인상적인 성과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직업능력개발사업 중 하나인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실업자와 재직자로 구분되어있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하나로 통합하면서 우선 발급 대상이 실업자 및 재직자에서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으로 확대되어 누구나 카드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들을 통해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건수는 21년 109만 6,914건으로 20년과 비교하였을 때 약 21%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훈련 인원도 71만명에서 105만명으로 약 47%가 늘어나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훈련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제도는 점차 보편적 제도로 발전하고 있다.

4) 고용안정사업

경상북도가 추진한 ‘고용안정 선제대응 지원사업’이 뚜렷한 고용창출 성과를 거두었다. 경상북도는 2021년 1,431명의 고용창출을 비롯해 직업훈련 270명, 고용서비스 1,470명, 기업지원 150개사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5년 간 697억 원 가량의 사업비를 동원해 고용위기의 지역에 산업정책과 연계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고용안정을 도모했다. 정부에서 근로장려금을 2009년 59만 가구에 4500억원을 첫 지급한 이후 어려운 형편에 처한 근로자와 영세사업자 등 저소득 가구에 지속적인 도움을 행하고 있다.

IV. 고용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1) 고용보험 적용 대상

우리나라 고용보험 적용 대상은 몇 년 전부터 확대 되어 왔다. 그러나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적용되지 않는 취업자가 있다. 보호가 더 필요한 취약계층이 고용보험 적용대상자에 포함되지 못하고 미가입자로 남아 있다. 바로 임의가입 대상인 자영업자이다. 자영업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 이유는 자영업자가 보험료를 전부 부담하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는 보험료를 전부 혼자 부담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하기를 주저하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다른 근로자에 비해서 더 까다롭다. 폐업 이유를 입증해야 하거나 매출 감소를 증명해야 하는 등의 조건이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1인 자영업자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충족하기 까다로워 실업급여를 받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자주 발생한다. 또한,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적용되지 않는 직종들도 존재한다. 공무원, 교원, 별정 우체국 직원, 특수형태근로자, 일부 단시간 근로자 등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2)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고용보험의 문제의 두 번째는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의 차이가 근소하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와 세계 경기침체로 인해 실업률이 급격히 상승하였다. 이 때문에 실업급여가 더욱 중요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 제도의 한계와 문제점도 함께 드러나게 되었다.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의 차이가 매우 작아져서 높은 임금을 받아왔던 실업자들이 기존 수입보다 낮은 수준으로 열악하게 생활해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게다가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근로자, 영세자영업자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가장 큰 위기를 겪었다.

3) 반복수급

실업급여 반복수급 문제는 몇 년 동안 증가하고 있다. 실업급여 반복수급 문제는 다양한 요인과 얽혀있다.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에서 실업급여를 얻는 꼼수와 부정수급을 부추기는 동영상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기업에서는 계약직 근로자들에게 계약 연장을 하라며 부추겨 구직급여 반복수급 문제가 더 많이 증가하였다.

4) 부정수급

실업급여 수급자가 취직이나 근로를 함으로써 받는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식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를 부정수급이라고 한다. 자진 퇴사를 해고당했다고 속이거나 일자리를 구했는데도 실업급여를 타 가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이미 근무 중인 직원을 신규 채용자로 둔갑시키거나 사업주의 친인척을 허위 등록해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이 동원됐다. 코로나 시기 이후 감소세였던 2022년과 비교하면 24% 급증하였다. 이런 상황이 확인될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받았던 실업 급여액을 전부 반환하거나 부정하게 받은 금액을 2배로 지불하게 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2. 개선방안

1) 고용보험 적용 대상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직종인 공무원, 교원, 별정 우체국 직원, 특수형태근로자, 일부 단시간 근로자도 임의가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 노동시장이 변화함에 따라 65세 이상 취업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등 새로운 불안정 취약계층을 포함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보험료를 전부 혼자 부담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하기를 주저하는 자영업자 중에는 고용보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가 있다. 이들을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지원을 적극적으로 행해야 한다.

2)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우리나라 실업급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구직급여 하한액의 최저임금을 폐지해야 한다. 그리고 고용보험 기금의 여건과 보험료 부담 등을 생각해서 합리적인 금액으로 정해서 지급 방식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 또한, 현재는 상한액과 하한액을 따로 규정하고 있다.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의 차이를 더 두어 합리적인 실업급여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가장 큰 위기를 겪은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 정부는 “코로나19 지역 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하였지만, 고용보험 비적용 대상자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런 것을 보면 실업급여 상한액의 상황을 보다 다각적이고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검토해서 이런 문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3) 반복수급

실업급여 반복수급 문제는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에서 실업급여를 얻는 꼼수와 부정수급을 부추기는 동영상과 같은 다양한 요인과 얽혀있다. 이런 동영상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모으고 해결책이 아닌 부정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동영상이다. 이런 동영상을 보고 반복수급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 문제가 일어날 우려가 있으므로 동영상을 제한할 기준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구직활동을 활발하게 해야 하지만, 오히려 그 실업급여에 의존하여 구직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구직급여에 의존하는 상황에 대해 개선하고 현행 고용보험 납부액 대비 구직급여 지급 수준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보는 것이 좋다. 그리고 실업자들에게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교육을 해야 부정적인 방법으로 반복수급을 하지 않을 수 있다.

4) 부정수급

실업급여 수급자가 취직이나 근로를 함으로써 받는 수입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부정적인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실업급여 수급자 신청을 할 때, 교육을 하거나 부정수급을 할 경우 받는 처벌을 공지해주는 교육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문제로 자리를 잡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부정수급에 관해 설명해 주고 부정수급을 했을 때 받는 처벌 등을 교육해 주는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사람들이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느끼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온라인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팝업창으로 부정수급에 대한 설명과 그에 대한 처벌을 구체적으로 알려 부정수급이 명확하게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는 방법도 중요하다. 이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와 수사를 진행하는 고용보험 수사관의 인력을 강화하여 구직활동을 허위로 했거나 이직 사유가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신청자를 처리하기 위해 서류가 사실인지 확실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정수급에 대한 시민들의 신고가 중요하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신고에 참여하도록 포상금 제도 등 여러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으로 인해 적자 상태에 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고용보험 기금은 자금을 필요한 곳에 쓰지 못하여 적절하게 운영할 수 없게 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방지와 고용보험 기금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 개선 방안을 내세울 필요가 있다. 고용보험 기금의 재정이 안정화된다면 실직자들은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고 고용보험 기금도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효율적으로 재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V. 기관 탐방 소감 및 평가



1. 기관 개요 및 방문 정보

- 1) 방문 기관 및 위치
 - 전주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2층 고용센터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114)
- 2) 방문 일시 및 방문 인원
 - 2026. 05. 29. 강민서, 김지을, 염지수, 정하량 방문
- 3) 인터뷰 대상자
 - 전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 팀 관계자

2. 기관의 역할 및 주요 기능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국민의 고용 안정과 복지 증진을 통해 국민 복지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고용센터, 일자리센터, 복지지원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서민금융센터, 제대군인지원센터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여 국민들이 쉽고 편하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 복지, 서민금융 등의 서비스를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기관이다.

주요 업무로는 구직자에 대한 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인업체에 대한 인력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업지원 업무가 있으며, 이외에도 근로자 실업급여 지급, 직업능력개발에 필요한 비용 지원 및 사업주의 고용유지, 교육훈련 비용 지원 관리의 고용보험 관리가 있다.

3. 기관 근무를 위한 준비 사항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크게 공무원과 공무직(기간제 및 무기계약직)으로 나누어 채용 절차가 이루어진다. 공무원으로 입사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공채 시험을 통과하거나 경력채용을 통해 선발된다. 공무직의 경우에는 기간제와 무기계약직으로 구분되며, 무기계약직은 채용 공고 시험과 면접을 통해 입사 지원이 가능하다. 기간제는 별도로 공고되는 채용 공고문을 확인한 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자격 요건은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이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을 경우 채용 과정에서 가점이나 우대

를 받을 수 있어 도움이 된다. 또한 위탁기관이나 유관기관에서의 근무 경험, 또는 고용센터에서의 기간제 경력 등 실무 경험이 있는 경우에도 채용에 도움이 된다.

4. 실업급여 팀의 주요 프로젝트 및 제도

현재 실업급여 팀에서 진행하고 있는 제도로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추진되는 순서는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서 지원 신청을 한 후 수급 자격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급자격 심사를 진행한다. 그리고 수급자격이 결정되면 이를 수급 지원자에게 통지한다. 수급 지원자가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구직활동을 이행하면 수당을 지급한다. 대상은 15세~69세로 제한되어 있으며, 요건심사형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5~34세 청년은 5억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선발형은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에 해당한다. 이 위의 대상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며,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이하인 자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직업능력을 진단하고 직업훈련정보를 제공하며,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개인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지원을 진행한다. 또, 집단상담프로그램을 통해 취업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돕는다.

5.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 제도의 개선 필요 사항

고용보험에 대한 제도가 다양하여 어떤 제도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고 오시는 분들이 많다. 실업급여 부분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제한이 없다 보니 불분명하게 많이 받아 가는 분들이 생기는 문제가 있다. 아예 퇴사를 해버리고 한 번 받으시는 분들도 계셔서 횡수 제한을 시행하는 방법도 생각하였으나 노동조합의 반대가 너무 심하다 보니 개선하기에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실업급여1일액이 많이 크다 보니 한 달에 지급받는 금액이 180~190만 원 정도가 된다. 이에 따라 취업 촉진의 효과 보다는 실업급여를 다 지급받은 후 취업을 하려는 인식이 강하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을 바꿀 방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구직활동 방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통해 혜택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이러한 구직활동 중 지인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면접을 본 후 면접 확인서를 제출하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악용이 될 소지가 분명히 있다.

6. 느낀 점 및 종합 평가

이번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기관방문을 통해 고용보험 제도에 대해 이전보다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방문 전에는 고용보험을 단순히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만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실업 예방, 재취업 지원, 직업능력개발, 육아휴직급여 지원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며 국민의 고용안정과 생활안정을 돕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또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담당자와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취업지원, 직업훈련, 기업지원 등 다양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학교 수업에서 배운 내용이 현실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

특히 인상 깊었던 점은 다양한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지원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제도의 운영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실업급여의 부정수급과 같은 문제로 인해 제도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도 알게 되었으며, 제도가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이번 과제를 통해 고용보험과 사회보장제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으며,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관련 제도와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VI. 참고문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육아휴직제도 사용안내서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중소기업 모성보호제도 활용 우수사례, 23.11.12

고용24 홈페이지 - 정책소개 파트

김동현, 허재준(2018). 고용보험제도의 개혁 방향: 사각지대 해소를 중심으로. 한국정부학회.

김순희(2006). 우리나라 고용안정정책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 고용안정사업을 중심으로. 한국비교노동법학회.

김인유. (2026.1.7.).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지난해 고용보험 부정수급 609건 적발”. 연합뉴스.

김유진(2024). 실업급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동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

남재욱. (2025.9.8.). “실업급여의 딜레마? 도덕적 해이와 전국민 고용보험. 노동법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근로장려금,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든든한 버팀목’, 18.11.12

박민주, 정혜경(2023). 사업주 직업능력개발사업 참여 기업 및 개인의 특성과 성과에 관한 연구.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박원아(2016).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의 역할: 고용안정사업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지혜(2005). 모성보호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신문, 박승기 기자,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률 7년 만에 30%대 회복“, 24.02.07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사업평가, 이지연, 서울:국회예산정책처, 2014

아시아경제, 18만 육아휴직자 3조6000억 수급...고용보험 고갈에 "재원 재설계 필요“, 임은유 기자, 26.02.27

이인재 외. (2022). 사회보장론. 나남.

이정민. (2026.4.8.). “[단독] 일하느니 실업급여?...작년 부정수급 332억 ‘사상 최대’”. SBS Biz.

이종진. "고용보험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03.

안동mbc뉴스, ‘고용안정 선제대응 지원사업’ 고용창출 성과 나타나, 이호영, 21.12.05)

일자리창출 지원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개편방안, 금재호, 박성재, 박혁, 2005

지식백과. 고용보험의 변천과 현황.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 성과 점검과 향후 과제, 김봄이, 류기락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의 직업훈련 정책 변천과정, 김주섭

황수옥(2020).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개선사항.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고용보험의 배경.